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사례 ① [의견표명]

□ 민원 제목 : 신축아파트 보행로 벤치 설치 요청

□ 신청 취지

- ●●동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 보행로에는 벤치가 열 개 정도 설치된 반면 바로 옆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 보행로에는 벤치가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음. ▲▲▲▲▲ 앞 보행로에도 벤치설치 요청함. 혹시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 앞 보행로에 설치된 벤치 중 일부를 ▲▲▲▲▲ 앞 보행로로 옮겨주길 바람.

□ 피신청인 등의 주장

○ 주택과

- ○○○○○아파트와 △△△△△아파트 간 보행로에 설치된 벤치는 해당 지역 정비사업 시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함께 설치된 것으로 추정됨. ▲▲▲▲▲아파트와 △△△△△ 사이 보행로는 아파트 시공사에서 기부채납하여 현재 우리구 소유 도로로 유지관리되고 있으므로, 해당 민원은 도로 소관부서인 도로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공원녹지과

- ▲▲▲▲▲아파트와 △△△△△ 사이 보행로는 구유지 도로로 녹지 구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해당 민원은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님.

○ 도로과

- 「도로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해당 도로의 벤치는 도로 부속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우리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  
 다만 ▲▲▲▲▲아파트와 △△△△△간 보행로의 벤치 설치하는  
 입주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준공된 공동주택(아파트)의  
 관리부서인 주택과에서 처리하거나, 해당 도로 벤치를 아파트  
 조경시설의 일부로 보아 재개발 재건축 등에 따른 공원조성 및  
 인수 협의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 관계 법령 등

### 【도로법시행령】

제3조(도로의 부속물)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하 “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이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주유소, 충전소, 교통·관광안내소, 줄임쉼터 및 대기소
2. 환승시설 및 환승센터
3. 장애인 표적표지, 시선유도봉 등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
4.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가로등, 교통섬,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긴급제동시설 및 도로의 유지·관리용 재료적치장
5. 화물 적재량 측정을 위한 과적차량 검문소 등의 차량단속시설
6. 도로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장치, 기상 관측 장치, 긴급 연락 및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통신시설
7. 도로 상의 방파시설(防波施設), 방설시설(防雪施設), 방풍시설(防風施設) 또는 방음시설(방음숲을 포함한다)
8. 도로에의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및 비점오염저감시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말한다)
9. 도로원표(道路元標: 도로의 출발점, 도착점 또는 경과지역을 표시하는 표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선 담당 구역표 및 도로경계표
10. 공동구
11. 도로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도로에 연접(連接)하여 설치한 연구시설

## □ 판단 및 결론

-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조례」에 의하면, 구청장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하고, 걷기 편한 도로를 만들기 위한 여러 사항을 수행할 책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동 △△△△△와 ○○○○○○아파트, ▲▲▲▲▲아파트 사이 보행로에 대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아파트 사이 보행로 벤치는 설치 간격이 좁아 필요 이상으로 벤치가 과다하게 설치되어 있었고, ▲▲▲▲▲아파트 사이 보행로는 경사지면 면적이 좁아 여러 개의 벤치를 설치하기에는 부적당해 보였음.
- 따라서 피신청인은 해당 아파트 보행로가 현재 구유지로 되어있고 인접 아파트간의 보행 편의시설 설치의 형평성, 경사진 보행로 이용 노약자의 편의성 증진 등을 고려하여 적극행정 차원에서 도로과 주관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아파트 사이 보행로 벤치 일부를 ▲▲▲▲▲아파트 보행로에 이동설치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함.

## □ 처리결과

- 도로과에서 △△△△△아파트 조합을 통해 △△△△△아파트 준공 후 해당 도로의 도시계획시설(등의자 포함)에 대한 인수를 공원녹지과에서 받은 것으로 확인함. (\* 음부즈만 회의 후 추가로 확인됨)
- 이에 따라 공원녹지과에서 ○○○○○○아파트 앞으로 설치되어 있는 벤치의 간격을 조정하여 일부 벤치를 ▲▲▲▲▲아파트 앞으로 옮겨 설치 완료함.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사례 ② (의견표명)

### □ 민원 제목 : 불법주차 방지용 화분 이동 요청

### □ 신청 취지

- ‘은평구 ●●동 ○○○’에 설치되었던 불법주차 방지용 화분의 이동으로 인해 장기간 불법주차가 지속됨. 이로 인해 건물 주차장 진출입이 불가하여 불법주차 신고 및 불법주차 방지용 화분의 이동을 요청하였으나,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고충민원 신청함.

### □ 피신청인 등의 주장

- 주차관리과
  - 은평구에서는 평일 21시 이후와 주말 및 공휴일에는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차량 통행이나 주차장 진출입이 불가능한 경우 과태료 부과, 견인 및 이동조치 등의 단속을 실시중임. 해당지역 불법 주정차 신고 시 과태료 부과 예정임.
- 공원녹지과
  -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설치한 도로화분들은 현재 전량 수거된 상태로 ‘●●동 ○○○’에 설치된 화분은 주민센터 요청으로 배분된 화분으로 판단됨. 또한 상기 도로는 이면도로로 ‘●●동 주민센터’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동 주민센터
  - ‘●●동 ○○○’ 앞 원형화분의 이동과 관련해서는 주민센터 소관이 아니며, 다만 원형화분이 파손되어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 판단 및 결론

- ‘은평구 ●●동 ○○○ 도로’는 주택가에 위치한 이면도로로 「도로교통법」 제32조 제7호에 의거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일방통행 도로임. 현장확인 결과 해당 도로에는 주차 방지용 화분과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 다수 존재함. 주차방지용으로 도로에 설치된 화분의 간격이 넓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화분을 이동하기보다는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어 보임.
- 주차관리과에서는 내부지침에 의거 시민편의를 위해 평일 심야시간(21시~06시) 및 토요일 등 공휴일에는 계도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해당 구역에 불법주차 시 인근건물 주차장 진출입이 불가능해지는 주민불편이 야기되는 지역임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상시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할 필요가 있으며, 주차금지 구역 표지판 등의 추가설치 검토도 필요함.
- 또한 장기간, 중복제기된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공원녹지과에서 해당 구역에 원형화분을 추가로 설치하고, 화분 파손 시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는 ●●동 주민센터에서는 관할 내 설치된 원형화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 처리결과

- 주차관리과에서는 내부지침에 의거 시민편의를 위해 평일 심야시간(21시~06시) 및 토요일 등 공휴일에는 계도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해당 구역에 불법주차 시 인근건물 주차장 진출입이 불가능해지는 주민불편이 야기되는 지역임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상시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예정임.
- 공원녹지과에서는 장기간, 중복제기된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해당 구역에 원형화분을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원형화분에 대한 사후관리는 ●●동 주민센터에서 담당하기로 함.